

'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
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

대전광역시교육청

□ 결산검사 개요

○결산검사 기간 : 1995. 8. 30. ~ 9. 18.

○결산검사 위원 : 김광희외 5명

○ 시의원 : 2명

○ 공인회계사 : 3명

○ 세무사 : 1명

○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

(결산검사 의견서 첨부 지방의회의 승인)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

(결산검사위원 선임)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3항

(결산종료후 10일이내 통보)

□ 결산검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

○ 국고지원금 예산편성 부적정

○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

○ 예산의 목적외 집행

□ 결산검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

건 명	개선사항 요지	조치사항
○ 국고지원금 예산편성 부적정	○ 국고지원금은 중앙부처의 내시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내시액을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액을 추가경정예 반영계상하여야 함에도 변경시키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임.	○ 차후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였음.
○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	○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는 시설비 전용을 원칙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대전혜광학교 시설비를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시설비로 1억2,000만원을 전용하였음. 앞으로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후 집행하여야 할 것임.	○ 차후로는 관계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고, 시설비 등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토록 개선하겠음.
○ 예산의 목적외 집행	○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관서운영비의 집행내용을 검토한 바,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직원근무복 구입 등 4건에 대해 2,677만 4,170원을 목적외로 집행하였음.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산전용 등을 통하여 합법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.	○ 앞으로 추경예산편성을 통하여 합법합리적으로 집행토록 개선하겠음.